공직선거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25. 2010고합1394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서성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태주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1,5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